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선	기관의 장
람	



제1호(호외) 2023. 1. 9.(월)

**공고**

광양시 공고 제2023-42호 “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주민 수” 공표 ..... 1

회										
람										

▶ 발행 : 광양시    ▶ 편집 : 홍보소통실 (☎ 797-2323, 행정2713)



## “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주민 수” 공표

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2023년도 광양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연서대상 주민 수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.

2023. 1. 9.

### 광 양 시 장

작성기준일 : 2022년 12월 31일

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연서대상 주민 수 : 1,822명

(단위 : 명)

연서주민수 (주민총수 1/70이상)	청구권자 총수 (D=A-B+C)	18세 이상 주민 수 (A)	18세 이상 주민 중 선거권이 없는 자 (B)	외국인 수 (C)	비고
1,822	127,506	127,461	119	164	

#### ※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

제5조(주민조례청구 요건)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서명하여야 한다.

4.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·군 및 자치구 : 청구권자의 70분의 1

② 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.

#### ※ 「광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」

제3조(주민조례청구권자 수) ①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.